

#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조 철 우  
(총무부장)

## 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 수익자(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로 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보험 계약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 계약에 의한 수익자가 다른 계약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시에 정하는 수도 있고 후에 지정하는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인 경우는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보험 관계를 신속하게 성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거래 관계를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이다.

예컨대 운송업자, 창고업자, 수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의무의 일환으로 물건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하보험, 운송보험 또는 해상보험 등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격지거래(隔地去來)의 매도인이 송하인·인하인·매수인을 위하여 운송중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또한 보험계약자(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일종인 신용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순수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 준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소지하는 한 보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나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민·상법상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유치물이 멸실·오손된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2. 법적 성질

### 가. 대리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자기의 명의에서 타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 계약이며, 그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는 또 위탁 매매인처럼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

면,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또 위탁자 등 타인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대리의 법리로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 취득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나.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설이다. 이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직접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제3의 권리가 생기는데(민법 539조 2항) 비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못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권리나

똑하게 되는 이론의 구성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의 효과로 직접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다. 특수 계약설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이라는 설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상법상의 특수한 보험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 3. 계약 성립의 요건

#### 가. 위임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의 청약과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 타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든 보험에 있어서 위임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성 상법에서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위임을 받지 않고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정 행위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동시에 의무나 손해 방지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손해보험 계약자가 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단서 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등의 경우를 들수 있다.

#### 나. 피보험자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은 특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정되지 않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예컨대, 화물의 보관·운송 등의 경우에 이용될 수 있으며, 개정 상법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예컨대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의 피보험 이익의 귀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를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능력의 유무, 의사 표시의 하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보험 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고지 의무 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선의·

악의 또는 고의·중과실이 계약의 성립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

#### 다. 타인을 위한 의사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의 명시 또는 묵시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계약에서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도 유효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화물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것으로서 피보험 이익 관계가 피보험자의 개성과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의 목적 및 보험 사고 등의 피보험 이익 관계의 객관적 요소가 확정된 이상 그 주체가 되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고정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사고 발생시의 피보험 이익의 귀속 주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4. 효과

##### 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계약 상대방이고, 보험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각종의 의무와 형식적인 처분권을 갖지만, 이는 모두 보험 계약상의 권리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 1)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 계약상의 여러 가지 권리(권리를 가진다. 즉 보험 증권의 교부를 받을 수 있고, 보험 사고 발생전의 계약 해지권, 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 초과 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 적립금 반환 청구권 등을 가진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 사고 발생전의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는 때에만 해지를 할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 증권을 보험계

약자가 소지하는 경우에는 통상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전 상법에서는 민법 제542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설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541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타인의 보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제649조 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이러한 논란의 요소를 배제 하였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가 있다.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가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지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2)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보험료 지급 의무를 비롯하여 고지 의무,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 의무, 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한다. 타인을 위한 손해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지만 그 부담은 피보험자의 계산으로 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을 독일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라 한다.

##### 나.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의 권리·의무

###### 1) 권리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에서의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임의 유무에 관계가 없어 보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이를 소지 하지 않은 때에도 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입법례로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처분하거나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단서는 개정 상법에 신설된 것이며,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의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가 과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된 때에는 피보험자·보험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도 지게된다. 이는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그 권리 포기하는 때에는 보험료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고, 또한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개정 상법 제639조 제3항 과산의 경우 보험료 지급 의무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만이 지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과

산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도 존속하고, 보험자는 선택권을 갖는다고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함께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도 고지 의무,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 의무, 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도 손해 방지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법정 의무이며, 보험 계약에 따르는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5. 상법 관련 법규

개정 전 상법	개정 상법
제 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신설)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과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의 그 권리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과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의 그 권리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